포드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새로운 노동법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시장은 근로계약의 모순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근로계약은 계약에 의한 종속을 가능하게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법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에게 종속된 자이다. 근로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가 아니면 근로계약이라는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노동력의 판매와 구매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즉 타인의 노동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요컨대, 근로계약은, 그리고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의제하고 있는 임금노동은, 자유와 종속의 대립과 투쟁이다. 근로계약의 이러한 모순성은 노동삼권의 승인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개별적 차원의 종속을 집단적 차원의 자유로 지양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근거한 근대법의 이상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럴 때만 비로소 노동시장은 폭력과 야만의 수렁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합리성과 제도적 기초를 갖추게 된다. 이것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제7조)라고 규정하고, 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제8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지만, 사실 이

러한 요구사항들은 노동의 집단성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삼권이 부정되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노동현장의 폭력이 빈번해지는 이유를 미루어 알 수 있다.

노동법에서 '집단의 발견'은 이른바 포드주의적 노사타협을 가능케 했다. 즉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종속을 받아들이고, 대신 사용자는 그 대가로서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의 보상을 제공한다. 요컨대, 종속과 복지의 교환이다. 이를 위해서 포드주의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적 · 물적 요소를 포괄하는 총체적 사업 질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 총체적 사업 질서는 집단적 노동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강력한 통제권으로 형성되는 위계적 질서이다. 여기에서 자본가와 사용자와 경영자는 모두 한 몸이다. 포드주의적 산업노동과 그것에 기반한 복지제도는 무산자(프롤레타리아트)를 근로자(살라리아트)로, 현대 산업사회를 임금사회로 변모시켰다.

포드주의는 임금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미 한계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20세기 중반 서양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등장한 모델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근거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완전고용은 더 이상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지금 기업들은 복지와 단절된 경우에만 일자리를 만든다. 종속은 있으되 복지가 없거나(기간제, 파견), 아예 종속 자체를 은폐하거나 희석시키고 있다(하청, 특고). "제대로 된 노동"(decent work)은 의미 있는 기획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단지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만 좁게 이해될 때에는 복고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브루노 트렌틴[1]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트렌틴은 1997년에 출판한 『노동이

1) Bruno Trentin(1926~2007) : 파시즘을 거부하고 프랑스에 망명한 이탈리아 법학자 실비오 트렌틴의 아들로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16세에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 레지스탕스에 참여하였다. 하버드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949년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였다. 같은 해 이탈리아노동총동맹(CGIL) 정책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이탈리아공산당에도 가입하였다. 1962년에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988년에는 CGIL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994년까지 역임하였다. 1999년에는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노동이 자유로운 나라』는 원제가 *La città del lavoro*이며, 불어판

자유로운 나라』에서 오늘날 유럽의 좌파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 즉 이른바 "과학적 노동 관리" 개념이 좌파의 진보관에 미친 압도적인 영향력을 꼽는다. 테일러-포드주의는 단순히 대량생산-대량판매 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작업구조를 의미한다. 테일러-포드주의적 산업노동 시스템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과학적이라는 바로 그 이유에서 객관적으로 근로자를 사용자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 발전과정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유럽의 노동조합과 좌파 정치는 그 시스템을 받아 들이고, 즉 종속노동을 받아들이고, 대신 보상의 강화를 통해서 그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을 뿐이라는 것이 트렌틴의 분석이다. 임금노동이 본원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자유와 종속의 대립 투쟁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대신 종속을 취했다는 것이다. "노동에서의 자유" 가 아니라 "종속에서의 풍요"를 추구해온 것이 지난 세월 유럽 좌파가 걸어온 길이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노동, 노동해방에 대한 이상은 사라져 버렸다. 포드주의 이후, 유럽의 노동조합과 좌파 정치가 노동문제에 무능력한 이유이다. 그러는 동안 노동법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덫에 갇혀 버렸다. 바로 '수치(數治)', 즉 '숫자에 의한 지배'라는 이데올로기가 그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보호지수나 세계은행의 사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법치(法治)를 수치(數治)로 전환하는 기획들이다. 이 기획들은 노동기준의 전 세계적 '표준화'를 통해서 개별 국가의 노동법을 전 세계적 규범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기업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법제도를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은 *La Cité du travail*(Fayard, 2012)이다. 트렌틴에 의하면, 노동에서의 자유란 종속노동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노동장소에서 노동의 조직과 관리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노동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동을 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노동하는 자의 인격이 노동 속에 담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노동자의 인격성과 노동의 상품성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지양될 수 있다. 시테에서 자유로운 시민인 노동자는 노동장소에서도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노동장소에서의 자유 없이는 시테의 자유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로쇼핑(law shopping)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기선의 「고용보호지수의 의의와 한계」는 이 수치들이 얼마나 근거박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표준화는 한편으로 '규범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가령, 국제인증기구 ISO의 영어 표현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고, 불어식 표현은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normalisation>인데, 영어 이름의 "Standardization"은 표준화로 번역되고, 불어 이름의 "normalisation"은 규범화로 번역될 수 있다. 여기서 규범성이라는 말이 갖는 이중의 의미가 드러난다. 규범성은 "노동법의 규범성"처럼 쓰일 때에는 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가의 문제를 의미하지만, "회계규범"의 경우와 같이 평가지표들로 구성된 표준적인 기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법에 고유한 당위의 문제가 이해타산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치환된다. 질적인 문제가 양적인 문제로 치환되고, 비물질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계량화된 규범들은 법의 적용 문제를 표준으로 설정된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적 인센티브 문제로 대체한다. 법에 고유한 문제, 즉 의회에서의 정치적 심의 과정은 경제적 효용 문제로 대체된다. 민주주의가 시장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을, 특히 노동법을 시장에 복무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들이 과학과 합리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한,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는 테일러주의의 연속이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기의 노동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적 상황이다.

하지만 사이먼 디킨은 낙관적이다. 디킨은 『신자유주의 시기 및 이후의 노동법』에서 이러한 제반 조건들이 항구적이라기보다는 순환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1944년의 칼 폴라니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자기규제 시장이데올로기에 종말을 고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러한 기대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 기획특집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KLI